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1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7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 (2000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련 국무조정실의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심의한 사항으로
- 같은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제한사항(안 제11조제2항제2호)
 - 제11조제2항제2호의 추상적인 규제내용을 동조동항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내용의 제2호를 삭제
 - 제11조제2항제2호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조항)
 - 제11조제2항제3호 :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구의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추상적인 규제부분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특별시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업무지침”에 따라 우리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주민이 우리구의 구유재산을 사용시 본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인 규제사항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본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 본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는 바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6
----------	-----

제출일자 : 2000. 11. 2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 규제개혁과 관련 국무조정실의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토록 심의한 사항으로
- 같은 조항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제한사항 (안 제11조제2항제2호)
 - 제11조제2항제2호의 추상적인 규제내용을 동조동항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상적인 내용의 제2호를 삭제.
 - 제11조제2항제2호 :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1조제2항제3호 :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 : 없음.
- 라. 규칙(안) : 별첨.

마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 ①(생략)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	개정(안)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0. 12. 1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1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0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1) 청소년문화회관(유-스프라자) 건립을 위한 시유건물 및 토지의 매입.
- 2) 당산동 시범·외기노조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내 포함된 구유지 4필지(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도로)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 3) 영등포동 순영아파트 신축공사부지내 구유지(지목상 도로) 5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관리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우리구에서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되는 재산의 매입 1건, 매각 2건을 시행하는 내용으로서 매입계획(안)은 신길2동 107의2에 위치한 전평 733평, 대지 483평의 서울특별시 소유건물을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사용중인 바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지원받아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유-스프라자)」를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구의 지역특성상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환경이 도처에 산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입지조건에 있는 타당성 있는 매입계획(안)이나 2001년도 우리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에 약 10억 원의 매입예산을 반영